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58
----------	------

발의연월일 : 2024. 12. 19.

발의자 : 임미애 · 임오경 · 이강일

이용우 · 김문수 · 복기왕

김남희 · 김정호 · 이연희

송재봉 · 이원택 · 이광희

김동아 · 위성곤 · 김남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범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도매시장평가제도로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7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85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매시장 내의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3조의3,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 제8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정하되”를 “공모하여 지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는 거래물량 및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재무상황 등을”을 “재무상황, 등기임원별 보수내역 등을”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미만)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제8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위 30% 이하로 부진할 경우”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며”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사항은 제66조를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u>지정</u>) ①</p> <p>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u>지정</u>하되, 중앙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⑤ (생 략)</p> <p><u>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u>지정</u> 및 <u>재지정</u>) ① ----- ----- --<u>공모하여 지정</u>하되----- ----- ----- -----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u>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u></p>
<p><u><신 설></u></p>	

	<p><u>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u> <u>를 협의하여야 한다.</u></p>
<u><신 설></u>	<p><u>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u> <u>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u> <u>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u> <u>안정, 농업인 권익보호, 농수산</u> <u>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해 필요</u> <u>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u><신 설></u>	<p><u>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u> <u>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u><신 설></u>	<p><u>제23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적정</u> <u>수)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u> <u>의 상한수는 거래물량 및 규모</u> <u>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32조(매매방법) (생략)	<p><u>제32조(매매방법) ① (현행 제목</u> <u>외의 부분과 같음)</u></p>
<u><신 설></u>	<p><u>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u> <u>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u> <u>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u> <u>다.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u> <u>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u> <u>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u> <u>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 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	<p><u>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u> <u>시) ① -----</u></p>

<p>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u>재무상황 등을</u> 공시(公示)하여야 한다.</p>	<p>----- ----- -----재무상황, 등 기임원별 보수내역 등을-----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생 략)</p>	<p>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u>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② <u>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u> 및 <u>제5호</u>----- ----- ----- -----.</p>
<p><u><신 설></u></p>	<p>③ <u>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p>
<p>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p>	<p>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p>
<p>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미만)</p>	<p>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미만)</p>
<p>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p>	<p>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p>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② (생 략)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설>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 · 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위 30% 이하로 부진할 경우-----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개설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사항은 제66조를 따른다.